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Leading ADR and Private Leading ADR

최 석 범**
Seok-Beom Choi

〈목 차〉

- I. 서 론
- II. 선행연구분석과 국가주도형·민간주도형 ADR 정의
- III. 국가주도형 ADR
- IV. 민간주도형 ADR
- V. 결 론

주제어 : 대체적 분쟁해결, 국가주도형 ADR, 민간주도형 ADR

* 2009년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I. 서론

일반적으로 화해, 알선, 조정, 중재를 의미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소송외적 분쟁해결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ADR에 대한 소개와 논의가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ADR은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ADR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송을 다루고 있는 법원이 ADR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민사조정법이나 가사소송법상 조정제도가 이용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의 화해가 유도되는 등 ADR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ADR은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국가주도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ADR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 또는 관여를 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ADR의 도입에 국가의 개입이 많을수록 국가주도형 ADR이 정착될 가능성이 많고 최소한도로 국가가 개입하고 민간이 주도할 경우 민간주도형 ADR이 정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ADR촉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도모하여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ADR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관여는 입법이나 정책의 문제로서 귀결되며 국가가 ADR을 어떤 형태로 촉진 또는 규제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ADR에 대한 관여나 개입은 민간주도형 ADR의 발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DR에 대한 국가의 태도라는 관점은 두가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 의한 ADR의 촉진이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국가에 의한 ADR의 규제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 의한 ADR의 관여와는 별개로 민간주도형 ADR도 ADR의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주도형 ADR을 연구함에 있어서 민간주도형 ADR제도를 영국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대륙법제의 다른 유럽국가보다도 상대적으로 ADR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을 검토함으로써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을 통해 ADR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분석과 국가주도형·민간주도형 ADR 정의

1. 선행연구분석

김경배(2005)¹⁾와 윤선희(2003)²⁾의 연구에서는 ADR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면서, 주로 ADR의 종류, ADR기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ADR 제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홍성규(2001)³⁾의 연구는 온라인 ADR에 관한 법리적 연구와 실제 선진국들의 온라인 ADR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최석범(2008)⁴⁾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을 다루면서 온라인 ADR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광명(2003)⁵⁾은 다양한 형태의 ADR 중에서 사적 재판으로 불리는 중재를 중심으로 ADR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전자거래 분쟁에 있어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중 온라인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오원석·유병욱(2004)⁶⁾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무역에서의 온라인 중재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ADR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선광(2003)⁷⁾은 전자상거래 분쟁 유형과 해결에 관해 연구하였고, 김선광외 2인(2005)⁸⁾은 온라인 A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온라인 ADR시험 및 운영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거래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모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안제우(2006)⁹⁾의 연구에서는 온

- 1)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5, pp.251-274.
- 2)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한국중재학회 하계학술세미나』, 한국중재학회, 2003, pp.125-167.
- 3) 홍성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ADR의 특성과 실현과제”,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6권 제2호, 2001, pp.403-426.
- 4)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3호, 2008, pp.91-116.
- 5)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 p.142.
- 6) 오원석·유병욱, “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pp.61-101.
- 7) 김선광, “전자상거래 분쟁발생시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 pp.159-177.
- 8) 김선광·김종락·홍성규,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 구축방안”,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pp.3-35.
- 9) 안제우,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을 위한 관련 당사자의 책임”,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 pp.219-251.

라인 ADR의 활용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영찬 외 2인(2007)¹⁰⁾은 온라인 ADR의 실제 운영상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Buckle & Thomas-Buckle(1986)¹¹⁾은 환경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81개 선정하여 관련된 조정자와 참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의 이해관계자들은 조정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록 조정이 실패하였다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은 조정의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Sipe & Stiffler(1995)¹²⁾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조정된 집행사례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14개가 조정사용으로 갈등 해결이 되었고, 5개는 조정의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비록 조정의 효과가 없었던 사례들에서도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O'Leary & Raines(2001)¹³⁾의 연구에서도 ADR제도가 분쟁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반면, Amy(1990)¹⁴⁾와 Bingham(1986)¹⁵⁾은 ADR이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그 효과분석이 반드시 갈등해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갈등의 내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의 정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일반적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 재판이나 소송이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재판외 분쟁해결 또는 소송외 분쟁해결로 번역되기도 한다. 따라서 ADR은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소송이외의 모든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하며 협상, 알선, 중개, 조정, 중재 그리고 간이심리, 음부즈만, 법원 ADR, 사적 판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¹⁶⁾ 이러한 ADR은 자주적 의사에

10) 이영찬·김영성·강동준,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7, pp.43-61.

11) L. G. Buckle & S. R. Thomas-Buckle, “Placing environmental mediation in context: lessons from ‘failed’ mediatio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 Review*, Vol.6, No.1, 1986, pp.55-72.

12) N, G. Sipe & B. Stiffler, “Mediating environmental enforcement disputes: how well does it work?,” *Environmental Impact Assess Review*, Vol.15, No.2, 1995, pp.139-156.

13) R. O'Leary & S. Raines, “Lessons Learned from two Decad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grams and Process 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1, No.6, 2001, pp.682-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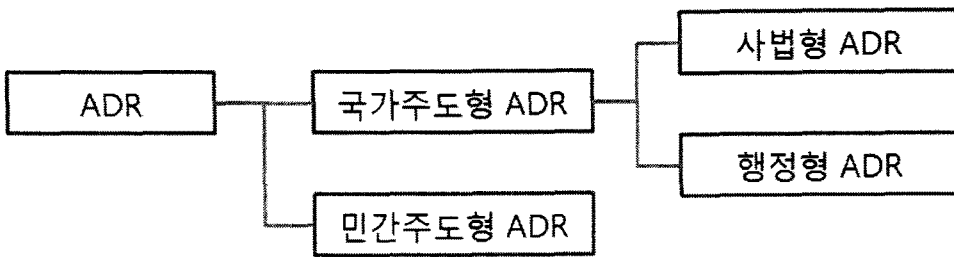
14) D. J. Amy,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The Promise and Pitfalls,” *Environment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CQ Press, 1990, pp.211-234.

15) G. Bingham,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 A Decade of Experience*, The Conversation Foundation, 1986.

16) 신군재,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pp.247-248.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처리의 합리성, 신속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도모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ADR은 크게 국가가 분쟁해결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 주도형 ADR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국가주도형 ADR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ADR로 정의할 수 있고 민간주도형 ADR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ADR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순히 국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면도 있으나 국가가 ADR에 관여하는 형태인 법원연계형 ADR과 행정형 ADR은 국가주도형 ADR로 구분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형태를 민간주도형 ADR로 구분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는 일부 예산이 정부에서 보조되고 있지만 중재인의 선정 등의 절차가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주도형 ADR이라고 볼 수 있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경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거래기본법상 구성되는 위원회이므로 정부주도형 ADR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의 구분

Ⅲ. 국가주도형 ADR

1. 국가에 의한 ADR의 촉진

(1) 국가에 의한 ADR의 개입단계

국가 ADR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ADR에 어떻게 개입되는가에 따라 ADR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에 의한 ADR의 관여는 다음의 4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¹⁸⁾

제1단계는 ADR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국가가 ADR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단계이다.

17) 우광명, 전개서, p.140.

18) 和田仁孝·太田勝造·阿部昌樹編, 「ADR」, 日本評論社, 2002, pp.76-79.

이 단계에 있어서는 ADR을 통해 분쟁해결합의가 성립되거나 중재의 합의에 기초하여 중재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것을 승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단계이다. 즉, 중재계약의 구속력조차도 국가가 승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단계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단계의 국가관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ADR을 통해 분쟁해결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국가가 화해계약 등의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도 계약에 기인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단계이다. 그러한 구속력이 승인된다는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그러한 계약 등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강제집행제도를 통해 국가가 그 내용의 실현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사적 자치의 승인 또는 존중 즉, 국가법으로서의 사법의 성립과 민사소송제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ADR에 의한 해결결과를 승인하는 것은 ADR 촉진이라는 방향에서의 진일보를 의미하지만, 합의의 효력요건을 국가법으로 규율하고, 일정한 사정하에서 그 효력을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ADR의 규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제3단계는 반드시 다음의 제4단계와 논리적인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민사소송제도에 더하여 각종 사법형식 또는 행정형식의 ADR을 스스로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민사소송제도에서 ADR로서 조정이 이용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단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정부주도형 ADR의 비교

구분	영국	독일	한국
법률	신민사소송규칙(1999)	민사소송법(1999)	민사조정법(2010)
ADR유형	조정, 조기중립평가	조정전치주의	조정

조기중립평가는 재판(trial) 전에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쟁점의 법적 평가 또는 사실관계 평가 등을 기초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고 조정전치주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제4단계는 국가가 제2단계에서 본 효력을 부여하는 차원을 능가하여, ADR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그것에 수반하는 형태로 규제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속한 국가로는 <표 2>와 같이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2〉 정부주도형 ADR의 비교

구분	미국	일본
법률	연방ADR법(1998)	ADR법(1999)
ADR유형	조정, 중재, 조기중립평가, 간이재판, 간이배심재판	화해의 중개(조정, 중재 등 포함)

(2)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의 목적

국가에 의한 ADR의 목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ADR의 목적론은 ①사법효율화설, ②정책적 구체설, ③질적 우위설의 세가지로 정리된다.¹⁹⁾ 사법효율화설은 분쟁을 본래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과 그 이외의 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ADR에서 처리하여 재판소의 사건부담을 경감하여 사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이다. 정책적 구체설은 권리의 현실적 이익으로서의 구체화를 중시하여,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소송절차를 대신하여 저렴하고 신속한 구체수단으로서 ADR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질적 우위설은 재판에 따르는 분쟁해결의 질적 한계를 비판하여 ADR이 커뮤니티의 가치실현과 당사자의 분쟁해결능력의 제고라는 장점을 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견해이다.

목적론이라는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①재판제휴적 긍정론1-케이스 로드 의 경감, ②재판제휴적 긍정론2-엑세스 확충, ③커뮤니티지향형 긍정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²⁰⁾ 그리고 ①사법운영의 효율화의 일환으로서 ADR의 적극적 활용·확충을 주장하는 전략, ②정의에 대한 액세스 확충,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적 권리의 사법시스템에 의한 실효적 구체의 한 수단으로서 ADR을 중시하는 전략, ③ADR에 의한 분쟁해결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²¹⁾

이러한 3가지의 입장은 본래 반드시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이라는 관점으로 제시되거나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의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의 내용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의 내용은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특히 ADR의 이용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부여하려고 하는 법적인 기반이슈의 내용들은 그 요건설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ADR 대상의 한정·선별은 그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ADR에 대한 법적 효과 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ADR에 대한 규제

19) 前掲書, pp.69-72.

20) 和田仁孝, 「民事紛争處理論」, 信山社, 1994, pp.130-134.

21) 田中成明, 「現代社會と裁判-民事訴訟の位置と役割」, 弘文堂, 1996, pp.125-129.

라는 측면을 수반하는 것이 된다.

〈표 3〉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의 내용

구분	내용
활성화 기반이슈	① ADR을 법률상 인지하는 것에 의한 정통화 기능의 부여 ② 재판소나 관계부처를 포함하여 ADR관계 제기관 상호간 연락체제의 정비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의 충실 ④ ADR담당자에 대한 연구 등의 충실 ⑤ 비법조인의 ADR에서의 활용 ⑥ ADR절차에 관한 일정한 default rule의 제정
법제적 기반이슈	⑦ 법률부조의 대상화 ⑧ ADR이용제기에 대한 시효중단효과 또는 정지효과의 부여 ⑨ ADR이용제기에 대한 민사보전법 ²²⁾ 상의 기소명령이행의 효과 부여 ⑩ ADR에서 해결합의에 대한 집행력의 부여 또는 집행력 부여 절차의 간이화 ⑪ ADR절차 주재자에 따른 보전조치의 효력부여 ⑫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의 일부를 ADR절차에 제공 ⑬ 불출두에 대한 제재제도 등의 정비 ⑭ ADR절차자료의 사후적 이용의 제한, 절차주재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의 설정
ADR이 용의 강제	⑮ 재판절차으로부터 ADR절차의 사건회부의 제도화 ⑯ 재판절차에 대한 ADR절차의 전치(前置) ⑰ 일정사건유형에서 재판적 구제의 부정을 수반한 ADR이용의 지시

자료: 早川吉尙·山田文·濱野毫, 「ADR의基本的視座」, 不磨書房, 2004, pp.68-69.

2.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의 제약원리

(1) 사적 자치

국가에 의한 ADR 개입 2단계에서의 국가의 ADR에 대한 관여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는 ADR촉진에 대한 제약원리이기도 하다.²³⁾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한, 국가는 분쟁당사자가 상대교섭 또는 ADR을 통해 자치적인 해결을 하거나 소송제도를 통한 권리실현을 구하는가의 선택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 왜냐 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의 일반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²⁴⁾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을 승인한다는 그 이면에는 당사자가 그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22) 한국의 민사집행법에 해당된다.

23) 早川吉尙·山田文·濱野毫, 「ADR의基本的視座」, 不磨書房, 2004, p.77.

24) 坂内秀介, “裁判官による和解勸試の法的規律(一)”, 「法學協會雜誌」, 第117卷 6号, 法學協會, 2000, p.756.

않을 자유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자유나 이익의 발현의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난다.²⁵⁾ 첫째, 해당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자유나 이익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소극적 대처방식이다. 둘째, 해당분쟁에 대해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자기 권리의 실현을 구하는 자유나 이익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적극적 대처방식이다. 여기서 이러한 당사자의 자유나 이익이 국가에 의한 ADR 촉진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형태는 민사소송제도에 있어서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²⁶⁾이라는 형태로 처분권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추상적으로는 제약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으로부터 당사자가 ADR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점도 추상적으로 ADR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제약 근거가 될 수 있다.

(2)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소송제도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ADR이 촉진되는 경우에도 국가는 ADR과 함께 소송제도의 정비·개선에 노력을 하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가급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ADR촉진을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전통적인 법률주의(legalism) 하에서 재판이면 인정되어야 할 법적인 권리가 재판 외의 절차에서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²⁷⁾ 이러한 의미에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이 ADR 촉진의 제약원리로서 평가된다.

(3) 법의 지배

ADR의 촉진이 법의 지배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ADR 촉진이 의미가 없다는 논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지배도 ADR의 제약원리로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법의 지배가 방해 받는가하는 것은 어느 조치에 의해서도 예측되는 모든 사실상의 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평가가 쉽지 않다.

25) 早川吉尙·山田文·濱野毫, 前掲書, p.78.

26)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일본 민사소송법 1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 203조(처분권주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불고불리원칙은 한국의 공소불가분원칙에 해당된다.

27) 長谷部由起子, 「法律扶助とADR」, 財団法人法律扶助協會·日本の法律扶助—50年の歴史と課題, 財団法人法律扶助協會, 2002, p.497.

IV. 민간주도형 ADR

1. 영국의 ADR검토

(1) 개요

영국에서는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ADR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재, 조정,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이다.²⁸⁾ 상설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는 런던 국제중재재판소(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가 중재를 제공했던 경우가 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이용되고 있는 것은 영국 여행대리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Travel Agents: ABTA)에 의한 중재이다. 영국 정부부처와 기관은 1년동안에 자신들의 ADR 사용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 기간동안 ADR이 314건에서 사용되어 259건이 해결되었는데 전년도 2007/2008 기간동안 374건에 비해 이용건수는 줄었지만 해결건수는 75%에 비하여 82%으로 증가하였다.²⁹⁾

(2) 영국의 ADR발전상황

영국에서 중재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이 제정된 것은 1889년으로 ADR에 대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인교육, 훈련을 행하고 있는 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가 설립된 것은 1915년이었고, 런던 국제중재재판소는 1892년에 설립된 London Chamber of Arbitration에서 발전되어 만들어졌다. 노사분쟁에 관해서는 현재 1975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 1975)을 기반으로 설립된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가 조정과 중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1896년에 영국 정부에 의해 노사분쟁과 관련된 조정과 중재가 개시되었다. 그 후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1989년에 ADR그룹이 설립되었고 1990년에 The Centre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CEDR)이 설립되었으나 1990년대 전반에 영국에서는 ADR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였다.³⁰⁾

그러나 정부에 의한 ADR과 비교하여, 조정을 행하고 있는 민간 ADR기관의 역사는 상

28) H. Genn, *Court-Based ADR Initiatives for Non-Family Civil Disputes: The Commercial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 LCD Research Series 1/02, 2002, p.1.

29) Ministry of Justice, *The Annual Pledge Report 2008/09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us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arch 2010, p.4.

30) 竹井嗣人·大宮健男, “英國のADRの現状について”, 「ちようせい」, 第38号, 總務廳公害等調整委員會1996, p.24.

대적으로 짧다. 예를 들어,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조정을 행하고 있는 CEDR은 1990년에 영국산업연합(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근린분쟁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정(community mediation)을 행하는 지원조직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였고, 1984년에는 전국 조직이었던 Forum for Initiatives in Reparation and Mediation(FIRM)이 결성되었다. FIRM은 1991년에 명칭을 Mediation UK로 개칭하며, 조정과 관련된 정보보급 활동이나 조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초창기에 이들 ADR 기관을 지원하는 데에 소극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방침을 전환하였다. 현재는 재판소를 포함해서 민간주도형 ADR이용을 추진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ADR 추진정책으로 199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96)에 의해 가사 분쟁에서의 조정이 법률부조 대상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ADR을 법률부조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신중했던 영국정부의 태도는 여기서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Woolf경에 의해 민사사법제도개선하에서도 ADR 이용이 장려되었다. 즉, Woolf경은 분쟁해결을 위해 적절한 경우, 재판소는 소송사건을 ADR로 유도하는 것과 ADR기관이 가사 분쟁 이외의 민사분쟁을 대상으로 행하는 조정을 법률부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997년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ADR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1999년 4월 26일에 시행된 1998년 민사소송 규칙(Civil Procedure Rules 1998)에서는 ADR을 장려하는 재판소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ADR기관이 행하는 조정에 대한 법률 부조가 적용된 것도 1999년 사법으로의 접근법(Access to Justice Act 1999)에 의해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정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ADR을 이용하는 방침도 채택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정부가 ADR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우선, 영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소송증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수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 사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ADR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까지의 민사소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Woolf경은 1995년에 공표했던 중간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³¹⁾

첫째,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문제이다. 영국에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Time Charge 제도가 채택되어 왔기 때문에 변호사가 지나친 소송활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고액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비교적 소액인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소액을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1) The Lord Woolf, *Access to Justice : Interim Report to the Lord Chancellor on the Civil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1995, pp.10-13.

둘째, 소송지연문제이다. 고등법원에 제소된 사건이 공판(trial)에 이르기까지의 평균적인 시간은 1994년 시점에, 런던에서 163주, 지방에서 189주였다. 고등법원보다도 단순한 사건을 다루는 현재판소(縣裁判所: county courts)에서도 공판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80주가 걸렸다.

셋째, 민사소송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민사 제1심재판소로서 고등법원과 현재판소가 병존하고 각각의 사건에 적용된 규칙도 달랐기 때문에 어느 사건이 어떤 재판소에서 어느 수속절차로 심리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곤란하였다. 두 종류의 규칙은 어느 것이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 서투른 사람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다.

이상의 문제들 중,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은 고등법원과 현재판소에 적용되는 규칙을 현행 민사소송규칙으로 일체화시키는 것으로 일단 해결되었다. 그러나 고비용과 소송지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영국의 전통적인 민사소송의 당사자대항주의(adversary system)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당사자대항주의에서 양당사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쟁에 의해 사이가 나빠진 인간관계가 소송을 통해 더욱 더 악화될 경향도 있었다. 민사분쟁을 저렴·신속·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ADR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1994년에 대법관으로부터 영국의 민사사법제도의 개혁을 명령받은 울프경은 1996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 광범위한 민사재판절차를 개혁하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ADR에 대해서 ①재판소가 ADR의 이용을 장려하고, ②당사자가 ADR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 재판소가 소송비용을 산정할 때에 참작할 것, ③ADR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ADR을 법률부조의 대상으로 할 것, ④정부가 ADR에 대해서 일반시민에게 계몽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³²⁾

이러한 울프경의 보고서를 받아 대법관부는 ADR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³³⁾ 첫째, 법률가 등의 관계자가 ADR의 장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재판 외의 다양한 분쟁처리방법에 대해서 그 장점과 단점을 다룸과 동시에 그 전문기관과 연락처를 소개하였다. 둘째, 실제로 재판소가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을 권하는 시도도 시작하였다. 이 시도는 중앙런던현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소송액이 일정액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소가 양당사자에게 조정을 권하는 자료를 송부하고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소에 조정전문가를 불러와 거기에서 조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는 5%정도였으나 조정에 붙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50%가 조정이 성

32) Lord Wolf, *Access to Justice*, Final Report, Lord Chancellor's Department, July, 1996.

33) 西山 裕, "特集 英國におけるADR(裁判外紛争處理)について-環境紛争處理担当者の視点から見た状況", 「ちやうせい」, 第25号, 總務廳公害等調整委員會, 2001, p.3.

립되었다. 셋째, 올프경의 보고를 받은 민사소송개혁으로 재판소는 일단 재판이 걸린 사건이라도 당사자나 재판관의 판단으로 소송절차를 일정기간 정지하고 그 사이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영국의 ADR유형

영국의 ADR은 대법관부 소관이었으나 1995년에 대법관부가 폐지되고 그 이후에는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헌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가 ADR를 소관하고 있다. 잘 알려진 ADR로는 옴부즈맨(Ombudsman), 단속자(Regulators),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이고 잘 알려져 있는 않는 ADR로서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알선(Conciliation), 전문가해결(Expert Determination), 중립사실조사(Neutral Fact Finding), 조정·중재(Med-Arb)가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조정은 영국에서 민간 ADR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자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정을 내리는 ADR도 있는데, 이를 “조정·중재(Med-Arb)”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조정과 중재의 혼합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³⁴⁾

조기중립평가는 소송의 처음 단계에서 법조 그 외의 전문가가 양당사자가 제출한 주요 증거를 근거로 각각의 주장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화해가 성립되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그 외에 ADR로는 옴부즈맨(ombudsman)이 있다. 옴부즈맨은 공적기관 또는 사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을 조사하고 권고를 행하는 단독적인 중립적 고충조사기관이다. 그 권고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연금 옴부즈맨(Pensions Ombudsman)의 재정과 같이 양당사자를 구속하는 것도 있다.

34) H. Genn, op.cit., p.2.

〈표 4〉 영국 ADR의 종류

구분	내용
옴부즈맨 (Ombudsman)	· 시민 또는 소비자에게 불만을 받아 부적정한 행정에 대처
단속자(Regulators)	· 민영화된 공익사업의 단속자 · 영국에서는 국영기업의 규제당국이 당해 사업에 대한 불만처리 등을 행하는 기구가 존재
중재(Arbitration)	· Arbitration Act 1996에 따라 제3자가 중재를 행하는 것
조정(Mediation)	· 영국에서 조정은 크게 상사조정(Commercial Mediation), 가사조정(Family Mediation), 사회조정(Community Mediation)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외에도 노동문제, 차별문제, 어린이의 교육 등 폭넓은 분쟁을 취급 · 상업, 상해사고, 의료과오 등에서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 당사자의 동의하에 중립자가 쌍방의 주장을 듣고 결론을 어떻게 내야 할지 또는 법적 관점은 어떤지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알선 (Conciliation)	· 조정과 거의 같은 의미로 이용되는데 제3자인 알선자가 조정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간섭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노사분쟁 해결의 경우에 자주 사용
촉진 (Facilitation)	· Mediation 등과 비교하여 아직 분쟁으로서 성숙되지 않은 것이나 정책형성 등의 명확한 방향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촉진
전문가해결 (Expert Determination)	· 쌍방이 채용에 합의한 전문가 앞에서 주장, 설명을 하고 전문가에게 사안의 결정을 얻는 것 ·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 유효
중립사실조사(Neutral Fact Finding)	·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안전에 대해서 이용되며 중립의 전문가가 사안을 조사하고 이익평가와는 연결되지 않는 평가를 내리는 것
조정·중재 (Med-Arb)	· 조정과 중재를 합친 절차 · 조정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로 이행한다는 것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것

자료: 竹井嗣人·大宮健男, “英國のADRの現状について”, 「ちょうせい」, 第38号, 總務廳公害等調整委員會, 2006, p.24.

(4) 영국의 ADR기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민간 ADR기구가 창설되기 시작하였는데³⁵⁾ 상원의원이던 울프경의 사법개혁에 의하여 1999년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 Rules: CPR)이 통과된 이후 법

35) 박노형·이로리,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연구」,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8.11, p.41.

원에 의한 ADR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장려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부터 비영리 ADR기구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영국의 헌법부(Department of Constitutional Affairs)의 관할 하에 정부출연 기관으로 NMH(National Mediation Helpline: NMH)를 설치하였는데 여기에 민간협력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³⁶⁾ 정부차원의 ADR의 장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ADR의 활성화는 2002년 정부지출재심백서(The Government's 2002 Spending Review White Paper)의 발표에 따라 헌법부의 중요한 전략적 임무가 되었다. 그리고 법무부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에서도 ADR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기되는 분쟁 비율을 감소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민사재판에 의하여 해결될 배분사건의 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었다.³⁷⁾

영국의 경우에는 조정을 행하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 ADR기관이다. CEDR 및 Mediation UK 외에도 상사중재에 대해 조정을 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CI Arb), The ADR Group, Academy of Experts, 가사조정(family mediation)을 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Family Mediators' Association, National Family Mediation, The Environment Council 등이 있다. 이들 ADR기관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행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997년의 시점에서 근린 분쟁 즉, 지역사회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은 연간 약 10,000건, 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은 연간 약 250건으로 추정되었다.³⁸⁾ 특히, ADR기관으로서는 CEDR이나 CI Arb 등이 활약하고 있다.

먼저 CEDR의 경우 칼 맥키(Karl Mackic)가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원래 영국의 노사관계의 ADR기관인 노사화해중재기관(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에서 일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이러한 ADR기관이 있었다. 맥키는 이 기관에서 조정에 대한 기본적 기술을 익혔다. 영국에서도 조정이 보급될 것이라고 본 맥키는 조정 선진국인 미국에 건너가 조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상거래 조정의 전문가로 귀국하여 경제계의 지원 하에 CEDR이라는 상거래에 관한 전문조정단체를 설립하였다. CEDR은 1990년 11월 14일에 재계와 전문가를 자문역할로 활용하여 ADR의 이용을 추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그 역할은 상업적 조정(Mediation)에 의한 인식제고와 표준의 개발에 있으며, 주로 건축, 보험, 정보기술의 분야에서 ADR을 제공하여 왔다.

이 기관의 취급사건 수는 연간 500건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빌딩 등의 건축계약을 둘러싼 건물주와 업자와의 분쟁이다. 이것은 사건의 관계당사자 즉, 종합

36) Mickel Kallipetis and Stephen Ruttle, "Better Dispute Resolution -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Mediation in the United Kingdom Between 1995 - 2000" in Jean-Claude Goldsmith, Gerald H. Pointon and Arnold Ingen-Housz (Eds.), *ADR in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211.

37) 이로리, "ADR의 활성화와 법원의 역할 -영국의 민·형사 법원중개제도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19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p.488.

38) Peter Middleton, *Review of Civil Justice and Legal Aid-Report to the Lord Chancellor*, 1997, p.95.

건설회사, 하청업자, 설계사무소 등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하나 하나 각 관계자의 책임을 묻는 것 보다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적으로 각 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정이 선호되었다. CEDR의 분쟁해결 및 예방 서비스인 CEDR Solve는 2002년까지 10년간 6,000건의 상업적 조정(Mediation)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CIArb(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는 원래는 중재인을 통합하는 조직으로서 1915년에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주로 건축분쟁의 중재를 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중재에 의하여 비즈니스나 상업활동 분야를 위한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조정(Mediation)이나 재정(adjudication)의 ADR를 통해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있다.³⁹⁾

그리고 좀 더 특화된 ADR기관으로서 Age Concern이 있는데 이 기관의 최대의 특징은 고령자 문제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기관은 고령자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고령자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대처나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의 일부분으로 고령자에게 특화된 중재도 행하고 있다. 각지에 있는 유료 고령자용 주택이나 보호시설, 퇴직 시설 등과 계약하며, 거주자 간의 문제나 거주자와 집주인 간의 문제, 관리자와 종업원의 문제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eSettle.co.uk나 e-mediator, Intersettle.co.uk, TheClaimRoom 등 온라인에서 ADR을 제공하는 소위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기관도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다양한 ADR 기관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전을 이룩한 것은 다음의 2가지에 기인한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의 민사조정·가사조정에 상응하는 사법형 ADR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조정의 장소를 제공하고 조정자 선임이나 연수에 책임을 지고 조정자에 대한 보수가 나라에서 지불하는 조정제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민간 ADR 기관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ADR을 민간 자유경쟁에 맡겨 품질보증을 받은 ADR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부조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체제가 채택되었던 것이 다양한 ADR 기관의 경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둘째, 한국이나 일본의 소송상의 화해와 같이 소송절차 중에 재판관이 화해를 권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 대항주의의 전통하에서는 재판전 화해는 오로지 양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재판관이 화해성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Woolf경에 의한 민사사법제도 개혁 이전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2. 한국의 민간주도형 ADR 검토

한국에서의 ADR은 지금까지 민사조정, 가사조정이라는 국가주도형 ADR인 사법형 조

39) 獨立行政法人經濟産業研究所, 「ADR人材養成に係る海外動向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3, pp.13-14.

정이 ADR의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행정형 ADR은 50여개가 넘게 있으나 민간주도형 ADR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⁴⁰⁾ 거의 유일한 민간주도형 ADR시행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도 한국의 중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어 중재이외의 다른 ADR이 활성화될 수 있는 민간차원에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민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구도 없고 일반적으로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간주도형 ADR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주도형 ADR기구들이 많이 설치되고 분쟁의 성질, 규모, 당사자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치된 민간주도형 ADR기구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상의 다양한 제약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양적 그리고 질적 ADR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영국과 달리, 일본이나 한국에서 민간 ADR 기관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는 민사조정·가사조정이라는 사법형 ADR이 존재하며 이것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행정형 ADR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에서의 ADR은 주로 국가주도형 ADR인 사법형 ADR과 행정형 ADR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주도형 ADR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소송은 영국에서 만큼 일반시민들이 접하기가 어렵지 않다. 즉, 한국에서는 필요이상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본인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진지하게 대응하여 줌으로써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재판관은 대체로 화해권유에 적극적이다. 소송상 화해에 의해 어느 쪽 당사자도 납득할 만한 분쟁해결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의 민간주도형 ADR은 소송상 화해를 포함하여 기존 국가주도형 ADR과 부득이하게 경합 중에 있다. 영국의 민간주도형 ADR과 비교하면, 한국의 민간주도형 ADR은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민간주도형 ADR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함에 있어 사법형·행정형 ADR측, 국가주도형 ADR이 지금까지의 동일한 기능을 담당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주도형 ADR

40) 조원철, "법원연계형 ADR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언론중재」, 통권 114호, 언론중재위원회, 2010, p.39.

을 축소하여 민간주도형 ADR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어떤 기능을 민간주도형 ADR에게 위임할지 그럼으로써 이용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의 다양한 ADR유형을 연구하여 국내에서 그러한 AD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ADR 기구나 기관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그러한 기관이나 기구가 설립되는데 있어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관이나 기구의 ADR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도 각종 편의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ADR관련 법률을 신규로 제공하고 ADR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영국이외 국가의 ADR을 다루지 못하고 소비자분쟁이나 전자상거래분쟁에서의 ADR도 다루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ADR를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성이 있고 국가주도형 ADR과 민간주도형 ADR의 비교분석 등도 미흡한 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 연구」, 제18권 제1호, 2005.
- 김선광, “전자상거래 분쟁발생시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
- 김선광·김종락·홍성규,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 구축방안”,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 신군재,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박노형·이로리,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연구」,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8.11
- 안제우,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을 위한 관련 당사자의 책임”,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
- 오원석·유병욱, “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한국중재학회 하계학술세미나」, 한국중재학회,

2003.

- 이로리, “ADR의 활성화와 법원의 역할 -영국의 민·형사 법원중개제도를 중심으로”, 「경
영법률」, 제19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 이영찬·김영성·강동준,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
5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7.
- 조원철, “법원연계형 ADR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언론중재」, 통권 114호, 언론중재
위원회, 2010.
-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
회, 제18권 제3호, 2008.
- 홍성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ADR의 특성과 실현과제”,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6권 제2호, 2001.
- 獨立行政法人經濟産業研究所, 「ADR人材養成に係る海外動向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3.
- 西山 裕, “特集 英國におけるADR(裁判外紛争處理)について-環境紛争處理担当者の視点か
ら見た状況”, 「ちょうせい」, 第25号, 總務廳公害等調整委員會, 2001.
- 垣内秀介, “裁判官による和解勸試の法的規律(一)”, 「法學協會雜誌」, 117卷 6号, 法學協會,
2000.
- 長谷部由起子, 「法律扶助とADR」, 財団法人法律扶助協會 ‘日本の法律扶助—50年の歴史と課
題’, 財団法人法律扶助協會, 2002.
- 田中成明, 「現代社會と裁判-民事訴訟の位置と役割」, 弘文堂, 1996.
- 早川吉尙·山田文·濱野毫, 「ADRの基本的視座」, 不磨書房, 2004.
- 竹井嗣人·大宮健男, “英國のADRの現状について”, 「ちょうせい」, 第38号, 總務廳公害等調
整委員會, 1996.
- 和田仁孝, 「民事紛争處理論」, 信山社, 1994.
- 和田仁孝·太田勝造·阿部昌樹偏, 「ADR」, 日本評論社, 2002.
- Amy, D. J.,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The Promise and Pitfalls,” *Environment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CQ Press, 1990.
- Bingham, G.,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 A Decade of Experience*, The
Conversation Foundation, 1986.
- Buckle, L. G. & S. R. Thomas-Buckle, “Placing environmental mediation in context:
lessons form ‘failed’ mediatio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 Review*, Vol.6, No.1,
1986.
- Genn, H., *Court-Based ADR Initiatives for Non-Family Civil Disputes: The Commercial*

-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 LCD Research Series 1/02, 2002.
- Goldsmith, Jean-Claude, Gerald H. Pointon and Arnold Ingen-Housz (Eds.), *ADR in Business*, Kulwer Law International, 2006
- Lord Chancellor's Department, *Emerging Findings: An early evaluation of the Civil Justice Reforms*, Mar. 2001.
- Middleton, Peter, *Review of Civil Justice and Legal Aid-Report to the Lord Chancellor*, 1997.
- Ministry of Justice, *The Annual Pledge Report 2008/09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us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arch 2010.
- O'Leary, R. & S. Raines, "Lessons Learned from two Decad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grams and Process 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1, No.6, 2001.
- Sipe, N, G. & B. Stiftel, "Mediating environmental enforcement disputes: how well does it work?," *Environmental Impact Assess Review*, Vol.15, No.2, 1995.
- The Lord Woolf, *Access to Justice : Interim Report to the Lord Chancellor on the civil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1995.
- The Lord Woolf, *Access to Justice*, Final Report, Lord Chancellor's Department, July,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National Leading ADR and Private Leading ADR

Seok-Beom Choi

ADR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at includes mediation, adjudication,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ombudsman schemes. ADR may be an alternative to going to court or to a tribunal. The main types of ADR are concil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and ADR is divided into national leading ADR and private leading ADR and national leading ADR includes court-annexed ADR and administrative ADR.

Court-annexed ADR has become a well established feature of the judicial systems on a global basis. The bulk of court-annexed ADR in United Kingdom is by way of mediation. Thus each nation takes part in ADR by court involvement and Enactment of ADR-related Laws. And the involvement of nations have both the regulative character and promotive character in ADR. In addition to the national leading ADR, the private leading ADR also must be activated as United Kingdom.

Thus this paper deals with national leading ADR and private leading ADR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ADR by studying the promotion and limited the involvement of nation in ADR and private leading ADR in United Kingdom.

Key words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National Leading ADR, Private Leading ADR